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2002-24

제출년월일 : 2002. 7

제출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- 정부차원에서 가축방역체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(순증 1명)되었으며,
-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정에서 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에 맞게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정원 증원(안 제2조)

구분	현행	개정	증원
총계	941인	942인	1인
집행기관의 정원	921인	922인	1인
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	20인	

- 시군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지침 - (순증 1명)
- 2003년 2월 28일까지 자치단체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직종별·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(부칙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지침 통보
[도총무 12200 - 1552(2002. 6. 18)호]
- 시군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
[전북 행정 12200 - 16(2002. 6. 15)호]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941인”을 “942인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921인”을 “922인”으로 한다
김제시조례 제402호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표 2]

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974인
1. 집행기관의 정원	954인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

김제시조례 제380호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 현원 24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941인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921인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2조(정원에 관한 적용례) 김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「표1」을, 2001년 7월 31까지는 「표2」를 각각 적용한다</p> <p>「표1」(생략)</p> <p>[표 2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6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73인</u></td> 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53인</u></td> 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생략</p> <p><u><신 설></u></p>	구 분	정 원	정원의 총수	<u>973인</u>	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53인</u>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	<p>제2조(정원의총수)----- -----<u>942인</u>----- -----</p> <p>1. ----- : <u>922인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2조(정원에 관한 적용례)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「표1」(현행과 같음)</p> <p>[표 2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6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74인</u></td> </tr> <tr> <td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54인</u></td> </tr> <tr> <td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생략</p> <p>①(현행 본문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<u>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 현원 2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u></p>	구 분	정 원	정원의 총수	<u>974인</u>	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54인</u>	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
구 분	정 원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<u>973인</u>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53인</u>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																
구 분	정 원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<u>974인</u>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54인</u>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20인																